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6 선고 2019가단4707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효성

담당변호사 서동민

변론 종결 2021. 2. 5.

판결 선고 2021. 3. 2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89,629원 및 그중 78,004,948원에 대하여 2019. 9.8.부터, 피고 회사는 2020. 10. 31.까지, 피고 D는 2019. 10. 25.까지 각 연 9%의,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15.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관기관으로 주관하는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고 한다)이 정부지원금 9,000만 원을 2회 분할하여 지급하기 로 하는 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지원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관기관 책임자를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로 지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보험가입금액을 9,0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을 2015. 5. 15.부터 2016. 11. 30.까지로, 보증내용을 '위 지원금 반환 지급보증'으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 D는 원고에게, 2015. 5. 12.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서명을 한 '보험계약체결 · 이행 등을 위한 필수동의서'(갑 제9호증)를, 2015. 5. 14.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전자서명을 한 '보험계약 심사용 선택동의서'(갑 제10호증)를 각 교부한 뒤, 2015. 5. 15.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원협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연 9%이다.

마. 피고 회사가 진흥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협약에 따른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진흥원은 2019. 7. 4.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8. 8. 진흥원에게 보험금 78,004.9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10호증, 을 나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구상금 78,004,94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9. 8. 9.부터 30일째 되는 2019. 9. 7.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384,681원의 합계 78,389,629원 및 그중 구상금 원금 78,004.948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즉 피고 회사는 2020. 10. 31.까지, 피고 D는 2019. 10. 25.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인 E의 부탁에 못 이겨 명의상으로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나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피고 D가 그의 주장과 같이 명의상으로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행청구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이정권